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A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해고예고의 적용은 제외되나, 해고·정직·기타 징벌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 서류 미제출의 고의성 여부, 허위경력 기재 사항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해고예고의 적용은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서류 미제출, 허위경력 기재 사유로 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정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중 정직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절차, 그 내용·절차가

Q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근로】 APT경비원을 해임할 시 해당자에게 몇일 전에 알려야 하는지 기간을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22-3)

전·기·상·식

한전포천지점 수요관리과장 나현철



Q 축냉식 냉방시스템이란?

A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얼음이나 냉수를 생산하여 축냉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 냉방에 사용하는 중대형 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 이용하는 '축냉식 냉방설비'와 일반 가정 및 소형건물의 냉방에 이용하는 '소형축냉식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서 건물의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장점은 열원기기의 운전시간이 연장되므로 냉동기 및 열원설비용량의 감소가 가능하고, 심야전력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비의 절감과 수전 설비와 계약전력 감소에 의한 기본요금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축냉식 냉방시스템(Ice Thermal Storage System)은 야간에 열을 생성하여,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열을 녹

Q 축냉식 냉방설비비?

A 심야시간(23:00~09:00)에 값싼 심야전력으로 열을 또는 냉수를

만들어 축냉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 냉방시간에 이용함으로써 주간 최대 부하시의 냉방전력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냉방시스템입니다. 축냉식 냉방설비는 중·대형건물에 적합한 냉방시스템으로서 쾌적한 냉방을 약속하는 탁월한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직접 설치비용을 감소전력 kW당 200kW까지 48만원씩 지급하고, 설계사무소에 5%의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부자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여 줄 뿐만 아니라, 전기 설치에 따른 고객부담공사비를 면제하여 주는 등 정부 및 한전에서 적극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요자금의 80%까지 연리 3.75%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시설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수요관리과 031-539-0233

의·학·상·식

포천병원 소아과 과장 이종승



소아 예방 접종

최근 빈번한 예방접종 사고를 대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접종 후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유럽에서는 빈번한 부작용 사례가 있어 접종을 중단하였고 그 때문에 해당 질병의 발생과 유행이 뒤따라 다시 예방접종을 개시했던 전례가 있다. 접종을 기피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합병증은 예방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망 및 뇌증의 발생빈도(100~200만 접종당 1회)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접종을 받으면서 부작용의 출현가능성을 미리 확인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PT) 예방주사는 200만 접종당 1명에서 부작용이 출현한다. 연간 60~70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한다고 가정할 때, 한 살이 되기 전까지 3회의 DPT 접종을 받게되면 약180~210만 접종당 1회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으로는 접종사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영아돌연사증후군(특별한 질병없이 영유아가 급사하는 경우)이라는 것이 있다. 그 발생빈도는 1만명 영아당 일본은 4명, 미국은 7명, 한국은 2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망시기가 DPT 접종 시기와 일치하여 생후 6개월 이내에 95%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예방접종 부작용의 대처방안

① 접종은 가능한 한 오전에 받도록 하고 주말 접종은 피하도록 한다.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접종 전에 전문의사의 진찰을 꼭 받도록 한다. 의사는 접종 전 해당 예방주사의 금기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접종시 예방접종수첩을 꼭 지참하고 접종 후 아기의 임상양상을 관찰하여 기록하여 놓는다. 예를 들면 <접종 후 하루만에 미열이 있었다>라든가 <접종 48시간 후에 발진이 있었다> 등등.

④ 접종 후 3일까지는 아기의 상태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임상증상이 있을 때는 접종 부작용을 의심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다.

☛ 예를 들어 예방접종 후 아기가 잘 놀지 않으면서 처지거나, 잘 먹지 않거나, 보채거나, 자주 잠을 자려고 하거나, 경기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접종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아기의 상태가 무언가 과거와는 틀리다는 느낌이 들 경우 부작용을 의심.

☎ 포천병원(031-539-9114)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박탈 가능한지】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신분 내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 내지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는지요?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종원명부에 미등록된 자의 종원 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A 종중이 그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 존속집단으로서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상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별도의 결의나 약정에

또한 "고유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5048 판결).

또한,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존속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1194 판결),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신분 내지 자격이 박탈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그러므로 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종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상위 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학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 중 모 중학교 교내에서 이 학교 남학생 6명이 3년간 같은 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을 2개월 여 동안 학교 내에서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교내에서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방과 후가 아닌 점심시간에 교장실과 교무실 바로 옆 층의 무용실에서 발생했다는 데서 안전케만 여겼던 학교의 안전망이 붕괴된 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가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집단

형편이 좋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에게는 착한 학생들로만 여겨져 피해학생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야한 동영상 보고 그대로 흉내냈다'고 말하였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성관계가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잘못된 성 관념을 익히게 되어 왜곡되고 변태적인 내용을 보고 따라하면서 성폭력이 성관계로 오인되어 인식

되어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만연하는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인터넷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후유증이 나타나고, 청소년기의 경험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자 사한다는 특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비밀유지의 위협을 받아 부모나 주변인에게 말하기가 어려워 피해 상황이 지속되어짐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나 부모들은 더 큰 충격을 겪게 되고 피해자의 보호와 문제해결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제도와 학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후 학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는 부동산공급업】 우리법인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교부한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이 있는 법인으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조업·광업·건설업·도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비율은 그 중소기업의 사업장 위치와 규모의 크기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부터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은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종합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영 건축물 건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 공급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법인이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일지라도 주택을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이를 인수받아 분양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 아남 플라워

http://www.anamflower.co.kr

## 전국 꽃 배달 서비스

의미는 축하의 마음  
**생일/기념일**

사업의 번창을 기원  
**개업이전**

소중한 당신을 내 운명  
**사랑의 고백**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취임**

건강과 쾌유를 빕니다  
**출산/병문안**

이사·세집 마련 축하  
**집들이 선물**

애도와 추모의 마음  
**근조/추모**

■대표 장춘화 ■031) 847-2298 ■의정부시 금오동 374-1번지 아남주상복합상가 119호